

제423회 임시회
' 25. 1. 22.(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3.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그 밖에 인용 문구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함. (안 제18조)
- 잘못 인용된 조항을 개정함. (안 제19조)
- (현행) 제17조제2항 → (개정) 제18조제2항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그 밖에 인용 문구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응급구조 장비로, 심정지 발생 시 '골든 타임'으로 알려진 4분 안에 내 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은 80% 수준으로 높아짐.
 - 이에 자동심장충격기는 24시간 사용가능토록 설치하는 것은 활용도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인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함.
 - ※ 서울시의 경우 24시간 편의점, 공용화장실,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응급환자”, “응급의료”의 용어 정의에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
- 안 제15조제1항은, “구급차 등의 운전자”를 “구급차등의 운전자”로 변경함.
 - 이는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3)에 정의된 “구급차등”이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괄하고 있어 자료협조 요청 대상으로서 “구급차등의 운전자”가 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제2조(정의)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안 제18조제1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함.
 - 이는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잘못 인용된 조항을 개정한 것임.
 - 본 내용은 도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제17조제2항으로 잘못 인용된 바, 이를 제18조제2항으로 바로 잡은 것으로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그 밖에 인용 문구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참고

충청북도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현황(2024.12.31.기준)

(단위:대)

구분	총계	의무설치시설															기 타 (의무 외 설치 시설)
		소계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소방 구급대 구급차	항공 기 공항	선박	공동 주택 (500 세대 이상)	의료 기관 구급차	300인 이상 사업장	관광지 및 관광 단지 소재 시설	다중이용시설						
											철도 역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종합 운동장 (5천석 이상)	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소년원	중앙 행정 기관 청사	시도 청사	
계	3,131	1,714	365	149	14	13	423	89	569	27	10	2	16	19	14	4	1,417
청주 상당	263	122	20	9	0	0	81	9	0	0	0	0	0	0	0	3	141
청주 서원	205	133	19	3	0	0	61	12	18	0	0	0	2	14	3	1	72
청주 흥덕	510	394	13	17	0	0	74	12	252	1	9	1	1	3	11	0	116
청주 청원	322	180	13	8	14	0	60	7	78	0	0	0	0	0	0	0	142
충주	327	175	42	15	0	8	63	9	31	2	0	1	2	2	0	0	152
제천	358	95	25	14	0	0	24	9	21	0	1	0	1	0	0	0	263
보은	151	85	27	13	0	0	0	2	39	0	0	0	4	0	0	0	66
옥천	123	57	27	12	0	0	2	4	11	1	0	0	0	0	0	0	66
영동	100	45	31	8	0	0	0	4	0	1	0	0	1	0	0	0	55
증평	75	51	6	4	0	0	15	1	10	15	0	0	0	0	0	0	24
진천	194	138	18	13	0	0	23	9	73	0	0	0	2	0	0	0	56
괴산	96	57	34	11	0	3	0	5	1	2	0	0	1	0	0	0	39
음성	181	106	59	10	0	0	20	6	9	1	0	0	1	0	0	0	75
단양	226	76	31	12	0	2	0	0	26	4	0	0	1	0	0	0	150